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3월 25일(목요일) 석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작 성 과	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
작 성 자	사무관 나기호
전화번호	(직통)503-9012, (구내)4848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 제정

公正去來委員會[委員長 姜哲圭]는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단계판매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를 제정, 2004. 3. 23.자로 시행하였음

1. 제정 배경

- ☐ 다단계판매업체와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소비자피해는 주로 판매원 모집시 매출액·후원수당 등에 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에 기인함
 -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다단계판매업체의 규모, 후원수당 지급 수준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 ☐ 이에따라 2002. 7. 1 시행된 새로운 방문판매법은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
- ☐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공개대상 정보의 진실

성과 업체간 비교가능성이 관건이 되므로 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업체마다 상이한 매출액·후원수당의 산정 범위 등을 일원화시키고자 한 것임

- 이번 「고시」는 그간 업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이 결정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임

2.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

□ 매출액

-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상의 매출액
- 여러개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

□ 후원수당

- 개념 : 판매수당·알선수수로·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
- 판매행위 전에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선급금은 제외하고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품은 포함하여 그것이 지급되는 시점에 산정토록 함
-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 총판매원을 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후원수당총액과 1인당 후원수당평균액을 공개토록 함

☐ 다단계판매원수

- 후원수당을 실제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를 총판매원수와 구분 공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소비자의 회사선택이 용이하게 함

☐ 소비자불만처리와 관련된 정보

- 소비자 및 판매원의 환불요청에 대비한 환불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환불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연혁과 관련된 정보

-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나 소재지, 대표이사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문제 예방
- 최근 3년간 대표이사·상호·본사소재지 변경내역과 영업양수도 및 합병 내역을 공개토록 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되는 임의적 공개대상이며, 객관적 외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공개하도록 함

3. 정보공개의 방법

- ☐ 정보공개의 주기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존 공개된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변동사항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2회 이상 공개 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

4. 최초의 정보공개

- ☐ 공정위는 각 회사의 주주총회가 끝나는 4월 이후, 각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공개대상 자료를 제출 받아 그 허위여부를 검토후 2004년 상반기중 「고시」에 의한 최초의 정보공개를 할 예정임

5. 기대효과

- ☐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정부기관에서 공식발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부풀리기, 후원수당 부풀리기를 방지하여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함
- ☐ 동자료를 활용하여 좀더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대책 및 정책수립, 업계의 현황 분석 등이 용이해짐

※ 별첨 :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5호)

多段階販賣業者の情報公開에關한告示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5호

소비자·다단계판매원의 구매 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공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

I. 目 的

이 고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다단계판매원(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II. 用語의 定義

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 업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혹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판매품목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품목명을 병기한다.
3.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로·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하며 수당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금금 및 반품·환불로 인한 후원수당 환급액은 후원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며, 센터지원비·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한다. 후원수당 산정시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을 포함한다.
4. 영업양도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합병이라 함은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담당자라 함은 공제사고처리(소비자피해보상보험 업무),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및 교환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를 말한다.
7.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외상매출액 발생이후 그 대금이 회수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8. 평가·인증이라 함은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전망, 금융기관과의 관계, 기업형태 및 경영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신용평가라 함은 객관적인 경영평가지표·가치평가방식의 하나로 공제사고 가능성 및 소비자피해보상 기능의 충실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라 함은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또는 다단계판매업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조직을 말한다.

III. 情報公開에 관한 基本原則

1. 다단계판매업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 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소비자 등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 등이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 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등의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 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이 고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신규업체로서 직전연도의 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자의 휴업·폐업·부도·영업정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자연재해, 파산, 사업의 전부양도,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IV. 情報公開 方法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각 언론사에 공개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게재, 위원회 종합상담실 자료비치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정보공개 주기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공개된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2회 이상 공개할 수 있다.
 - (1) 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 상호 및 본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변동
 - (2) 다단계판매업자의 총매출액 규모, 후원수당총액, 반품·환불 비율(본 고시 V.5.에서 정하는 사항), 총판매원수의 변동

V. 情報公開事項

1. 다단계판매업자의 一般情報

-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 (2)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매출액과 관련된 情報公開

-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기준으로 다단계판매 부문의 매출액)

- (2) 상위 매출액 5개 품목의 개별 매출액(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및 구체적 품목명 병기)

<예시> 화장품(립스틱 등),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등), 주방용품(압력 밥솥 등)

3. 후원수당과 관련된 情報公開

- (1) 지급시점 기준의 후원수당총액
- (2) 선급금 및 반품·환불로 기지급한 후원수당의 환급액은 제외
- (3) 센터지원비, 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
- (4)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은 후원수당에 포함
- (5)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
- (6) 아래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후원수당 총지급액(원)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1% 미만 판매원		
상위 1% 이상 - 상위 6% 미만		
상위 6% 이상 - 상위 30% 미만		
상위 30% 이상 - 상위 60% 미만		
상위 60% 이상 - 상위 100%		
합계	(총지급액합)	(평균지급액합)

4. 회사연혁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情報公開

- (1) 최근 3년간 대표이사·등기이사 변경내역
- (2) 최근 3년간 상호 변경내역

- (3) 최근 3년간 본사소재지 변경내역
- (4) 최근 3년간 영업양도·양수, 합병 내역

5. 소비자불만처리와 관련된 情報公開

- (1) 반품·환불 요청 건수 대비 반품·환불 처리건수 비율(단순 교환은 제외)
- (2) 반품·환불 요청 액수 대비 반품·환불 처리액 비율(단순 교환은 제외)
- (3)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구체적으로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소비자피해보상 업무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

6. 다단계판매원수와 관련된 情報公開

- (1) 등록된 총판매원수
- (2)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사업활동을 통해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단순 소비목적 회원은 제외)

7. 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 산정액

- (1) 직전연도의 당기순이익
- (2) 직전연도의 대손충당금 산정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나타난 금액으로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의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충당한 금액을 말함)

8. 신용평가 혹은 평가·인증과 관련된 情報公開

- (1) 다단계판매업자가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외부기

관(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또는 다단계판매업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조직)에서 평가한 해당 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혹은 평가·인증 자료)

(2) 신용평가 혹은 평가·인증을 한 기관명칭, 평가 등급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